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9.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관련 법 적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당초 :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변경 :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촉 및 위원 자격 개정 사항 정비(제2조)

다.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및 주민참여감독자 자격 조항 삭제
(제12조,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을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구미시 재무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간사1인”을 “간사 1인”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법 제31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시행령”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 제1항 단서 중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를 “다만, 계약담당자 및”으로, “직접적”을 “직접적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u>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7조제2항,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u>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②위원장은 구미시경리관이 되</u>	<u>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u>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주민참여감독자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u>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u> <u>②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u>

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 6. (생략)

<신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생략)

② 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구미시 재무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 3. (현행과 같음)

4. 「건설기술 진흥법」-----

5. · 6.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연직-----

-----.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
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회계과장이 된다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
항

5. (생략)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행령 제108조에서 심의대
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
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생략)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
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 1억원
이하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 전임자 임기의
남은 -----.

③-----
--- 간사 1인-----

제4조(기능)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5. (현행과 같음)

②-----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하 "령"이라 한다) --

2. (현행과 같음)

<삭 제>

1. 마을진입로 확 · 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 · 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3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① 주민참여감독자라 함은 현장을
관할하는 구역내 주민대표자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2.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
서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등
에 종사하였거나 감리 · 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

<삭 제>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4.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

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설

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

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감독대상공사의 현장이 속하

는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 및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원
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
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
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
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
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
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

-----.

다만, 계약담당자 및 -----

----- 직접적으로

-----.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감독범위,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는 제60조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이장으로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4.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리의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 지급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 재무관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소관 실·과		회 계 과
입 안 자	과 장	강 신 석
	담 당	황 진 균
	담 당 자	김 민 정 (480-5062)